

대구고등법원 2024. 10. 15 선고 2023나17339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구고등법원 2024. 10. 15 선고 2023나17339 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3. 7. 12 선고 2022가단2433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박한결

피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파트원 담당변호사 이영희

변론 종결 2024. 8. 20.

판결 선고 2024. 10. 15.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3. 7. 12. 선고 2022가단2433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2. 7. 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2. 7. 11. 접수 제1848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채권자취소권에 기하여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 및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채권자취소권에 기한 청구를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하고, 피담보채무 부존재 및 무효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를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뜻한다.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사실을 처음부터 알지 못한 채 판결이 선고되었고 판결 정보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가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상소 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27195 판결 참조).

그리고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소장 부분 및 변론기일통지서를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23. 7. 12.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판결 정본 역시 2023. 7. 13.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23. 9. 12.경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2023. 9. 25.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 사이에, ① 2019. 5. 3. B이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부담하게 될 채무에 관하여 보증기한 2024. 5. 2., 보증금액 297,000,000원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② 2020. 4. 14. B이 C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부담하게 될 채무에 관하여 보증기한 2021. 4. 13., 보증금액 49,500,000원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③ 2020. 5. 20. B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대출을 받고 부담하게 될 채무에 관하여 보증기한 2025. 5. 20., 보증금액 285,000,000원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제3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제1, 2, 3신용보증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나. B은 2022. 3. 1. 신용보증부실 발생으로 제1, 2신용보증약정에 대한 신용보증사고를, 2022. 3. 17. 연체 및 가압류, 신용보증부실 발생으로 제3신용보증약정에 대한 신용보증사고를 각 발생하게 하였고, 이에 원고는 B을 대위하여, 2022. 6. 20. 제1, 2신용보증약정에 따라 C에 185,884,685원을, 2022. 8. 16. 제3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285,000,000원을 각 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B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대구지방법원 2022차전13346호)을 신청하여 2022. 8. 23.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473,877,881원 및 그 중 185,884,685원에 대하여는 2022. 6. 20.부터, 28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8. 16.부터 각 2022. 9. 6.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22. 9. 21.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채무자 B은 2022. 7. 1. 근저당권자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2. 7. 1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으로, B은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그 무렵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예비적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권은 부존재하거나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원고는 B을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4.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원고가 2022. 6. 20. B를 대위하여 제1, 2신용보증약정에 따라 C에 185,884,685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대위변제일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2022. 7. 1. 이전이므로, 제1, 2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나아가 사해행위 당시 피보전채권이 성립되지 않았더라도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 것인데(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3352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2022. 7. 1. 당시에는 제3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금 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지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미 구상금 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제3신용보증약정이 성립되어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인 2022. 3. 17. 연체 및 가압류, 신용보증부실 발생으로 인하여 제3신용보증약정에 대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점, ③ 원고는 위 신용보증사고 이후 2022. 8. 16. B를 대위하여 제3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285,000,000원을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제3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도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참조). 또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나) 채무자가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그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그러한 채무자의 담보제공행위는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이때 담보제공행위가 사업계속 추진을 위한 신규자금 융통을 위한 행위로서 사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율, 무자력의 정도, 그 행위가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불가피하고 유효적절한 수단이었는지, 담보제공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실제 자금이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사업의 계속을 위해 사용되어 채무자가 변제자력을 갖게 되었는지,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칠 의사를 가지고 행한 것은 아닌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7다264072, 26408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든 증거, 갑 제5호증의 기재, 제1심법원의 F, 법원행정처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제1심법원의 G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B은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안동시 H 창고용지 58㎡를 소유하고 있었고, 위 적극재산의 가액은 합계 1,244,512,600원 상당이었던 반면, 당시 B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C 등에 대하여 적어도 합계 1,434,384,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1	C	148,500,000
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5,000,000
3	원고	470,884,000
4	G조합	800,000,000
합계	1,434,384,000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더욱 부족하게 만드는 것으로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해질 것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B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나아가 위와 같이 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근저당권자이자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B은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2022. 10. 14.경부터 2022. 11. 8.경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투자금 685,000,000원을 받으면서 그 담보로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안동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I조합에 대한 금융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J조합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들 중 피고에게만 담보를 제공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권과 관련하여 2022. 10. 14.경부터 2022. 11. 8.경까지 B에게 685,000,000원의 투자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가 주장하는 위 투자금은 B의 사내이사 K이 피고에게 송금한 돈을 그대로 B에게 다시 송금한 것에 불과하다.

(2)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2022. 7. 11.까지도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과 관련하여 아무런 금원을 지급하지 않다가 그로부터 약 3개월 이상이 경과한 2022. 10. 14.경 이후에서야 비로소 B에게 금원을 지급하였고, 위 금원을 지급하기 시작한 시점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22. 10. 13. 이후이다.

(3) B이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부득이 피고로부터 금원을 투자받으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거나 피고의 투자로 인하여 B의 변제자력이 향상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2022년 사업연도 및 그 이후 2023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모두 신고하지 않았고, 세무서에 위 사업연도에 대한 재무제표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후 B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B에게 지급한 금원은 B의 사내이사 K이 피고에게 송금한 돈을 그대로 B에게 다시 송금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가 B에 지급한 금원이 B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사용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없다.

(4) 피고는 B에게 지급한 투자금에 관하여 피고의 동생인 L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J조합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으로 마련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J조합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J조합에 대한 대출금은 피고가 아닌 B의 사내이사 K이 2020. 10. 14. J조합로부터 500,000,000원을 대출받은 다음 그 중 490,000,0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해 준 것이고, 이후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 역시 피고가 아닌 K이 지급해온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피고가 위 대출금의 실제 채무자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B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지 못하였고, B의 대표이사의 권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B에게 685,000,000원을 투자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에게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일반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해의사가 없었고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악의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1) 피고 스스로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통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가압류 등이 마쳐진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피고의 2024. 3. 29.자 준비서면 제3면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상당을 초과하는 근저당권 및 가압류가 마쳐져 있었다.

1	G조합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040,000,000 (피담보채무 원금 800,000,000)
2	농업회사법인M 주식회사의 가압류	청구금액 128,921,000
3	N조합의 가압류	청구금액 19,977,007
4	원고의 가압류	청구금액 468,150,000
5	○영농조합법인의 가압류	청구금액 120,000,000
6	C의 가압류	청구금액 21,829,721
합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기준: 1,798,877,728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원금 기준: 1,558,877,728	

(2)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후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과 관련하여 아무런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먼저 마쳤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후 3개월 이상이 경과할 때까지도 B에게 아무런 금원을 지급하지 않다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22. 10. 13. 직후인 2022. 10. 14.부터 B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시점 및 피고가 B에게 금원을 지급한 시점은 사회 일반의 거래 관념 등에 비추어 이례적이어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가 B에게 금원을 지급하기도 이전에 미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칠 필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3)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2022. 6.경 우연한 기회에 지인의 소개로 B의 대표이사 P를 만나게 되었는데 P이 B 사업에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를 하게 되면서 투자금의 담보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피고의 2024. 3. 29.자 준비서면 제2면 참조). 그러나 이 법원의 1조합에 대한 금융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22. 1. 4.경부터 B의 사내이사 K과 사이에 지속적으로 금원을 송금하거나 입금받는 등 금전거래관계가 있었고, 1회에 100,000,000원에 달하는 거액을 송금하거나 입금받기도 하였다.

(4) 피고는 B에게 685,000,000원의 거액을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B의 사내이사 K과 사이에 이루어진 이례적인 금전거래에 관한 예금거래내역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을 뿐 피고와 B 사이에 투자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위 예금거래내역서 및 피고의 주장 외에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였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강동명

판사이성욱

판사주우현

별지